

2020년 생활지원과 자체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기 간 : 2020. 2. 17.(월) ~ 2. 21.(금)(5일)
- 감사범위 : 2017. 1. ~ 2019. 12.까지 처리한 업무일체
- 감사반 편성
 - 감사반장 : 기획감사관
 - 감사반원 : 감사팀장 외 3명
- 감사중점
 - 생활지원과 업무 전반 및 공직기강 확립
 -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및 각종 민원 처리실태
 - 출장·공가 등 복무관리 분야, 기록물 관리 적정여부
 - 물품, 각종 공사 및 보조금 분야 추진 적정 여부
 - 회계질서 문란 및 편법·변태 운영사례 집중감사 등

2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6건

○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부 서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회수)	
	계	주의	시정	현지시정 등	건	금액(원)
생활지원과	6	4	2	-	-	-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지적내용

연번	제 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6건(주의 4, 시정 2)	6	-	-	
1	상품권 대장 관리 및 구매·사용 내역 공개 소홀	주의	-	-	
2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통장 확인 소홀	주의	-	-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업무 처리 소홀	시정	-	-	
4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결과 통보 소홀	주의	-	-	
5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	-	
6	행정정보 사전공표 업무 소홀	시정	-	-	

처분요구서(1)

【제 목】 상품권 대장 관리 및 구매·사용 내역 공개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증평균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상품권 구매 대장관리 및 미공개 내역

지 출 일	지출과목	건 명	사용금액 (천원)	대장 관리	공개
계	계	8건	10,030		
2017.05.29.	행사실비 보상금	☆☆☆☆☆ 상품권 구입·지급	350	부	부
2017.09.20.	사회보장적 수혜금	○○○○○○ 위문품 구입·지급	1,250	부	부
2018.02.02.	사회보장적 수혜금	◆◆◆◆◆ 위문품 구입·지급	1,250	부	부
2018.05.29.	행사실비 보상금	♣♣♣♣♣ 상품권 구입·지급	350	부	부
2018.09.06.	사회보장적 수혜금	○○○○○○ 위문품 구입·지급	1,250	부	부
2019.01.25.	사회보장적 수혜금	◆◆◆◆◆ 위문품 구입·지급	1,900	부	부
2019.05.31.	행사실비 보상금	▣▣▣▣▣▣ 상품권 구입·지급	380	부	부
2019.09.05.	사회보장적 수혜금	▲▲▲▲▲ 위문품 구입·지급	3,300	부	부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품권 구매 시 자치단체 전체의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구매 하는 등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증평균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지침에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종류, 구매수량, 구매액, 사용내역 등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증평균청 홈페이지에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생활지원과에서는 ☆☆☆ 기념행사와 ○○○○ ○○○○에 따른 상품권 8건 10,030천원을 구입·지급하면서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비치하지 않았고, 증평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공개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생활지원과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생활지원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증평균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시어 상품권 구매 및 지급에 대한 대장관리와 공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2)

【제 목】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통장 확인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보조금 통장 내역

(단위: 원)

연번	보조사업명	보조금 통장 확인내역			비 고
		지급일	지급액	잔액	
1	2019년 ○○○○ ○○○○ 체육대회	2019.04.16.	5,000,000	47	
2	제64회 ☆☆☆ ☆☆☆ 행사	2019.05.30.	3,600,000	47	
3	2019년 ⊕⊕⊕⊕ ⊕⊕ 교육	2019.07.05.	1,000,000	8	
4	2019년 ◆◆◆ ◆◆◆◆ 견학	2019.10.08.	2,000,000	800,008	
5	제67주년 ■■■■■■■■ ■■■ 행사	2019.10.17.	3,000,000	351	

- 보조금 통장 내역(자부담금)

(단위: 원)

보조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비 고
	지급일	지급액	입금일	입금액	
제67주년 ■■■■■■■■ ■■■ 행사	2019.10.17.	3,000,000	2019.10.28.	250,000	

【지적내용】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증평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2017.9.25.)] IV.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2]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에서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하나,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음.

또한, 보조금 교부전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구비서류 여부,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생활지원과에서는 위와 같이 2019년 보훈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등 5건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전 해당 사업에 대한 계좌를 개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가 없다면 보조금 전용통장의 잔고가 0원인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채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또한,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전용통장에 예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전용통장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생활지원과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보조금 교부시 관련 사업계획 및 보조금 전용통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3)

【제 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업무 처리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 체납 과태료 업무처리 소홀 내역

(금액: 원)

연번	회계년도	납부자명	부과금액	독촉여부	압류여부	비고
계	-	5명	615,800	-	-	
1	2017	▣▣▣▣▣	131,800	부	부	
2	2018	♠♠♠	123,400	부	부	
3	2018	●●●	119,800	부	부	
4	2018	☆☆☆	119,800	부	부	
5	2018	◆◆◆	121,000	부	부	

【지적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4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음. 또한, 제27조(과태료) 제2항에서는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3항에서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 제3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생활지원과에서는 2017. 1.부터 2019. 12.동안 체납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89건(10,772,200원)중 5건(615,800원)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한 위한 납부독촉, 압류 등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생활지원과
- 행정상 처분 : 시 정

- 내 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액 5건에 대하여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4)

【제 목】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결과 통보 소홀

【심의결과 통보 현황】

연도	심의위원회			연장심의			결과통보	결 과 미통보
	소계	대면	서면	소계	승인	조건부		
계	24	-	24	1,167	1,117	50	416	751
2017	5	-	5	416	406	10	416	
2018	12	-	12	352	337	15		352
2019	7	-	7	399	374	25		399

※ 생활지원과 제출자료 재구성

【지적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차기연도 말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의 질환, 의사의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장승인, 조건부연장승인, 연장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심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생활지원과에서는 2017년~2019년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 1,167건에 대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장승인 1,117건, 조건부연장승인 50건으로 심의하고 2017년 416건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2018년~2019년까지 심의한 751건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연장승인 및 조건부승인 등의 사유, 회차,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장승인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생활지원과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생활지원과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5)

【제 목】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 황】

- 시설장비 유지비 세출 세부내역 불입 참조

【지적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은 별표 6의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 이와 관련하여 시설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내역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운영비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매뉴얼」(사회복지협의회 발간)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 적용범위를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하는데 소용되는 경비로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유지비, 시설장비 유지의 용역비로 하며,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 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단, 소규모 수리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집행)로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생활지원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의 운영비 보조금 정산검사에 있어 불입과 같이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으로 소모품 및 비품 구입, 수수료, 소규모 수리비 등 운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통상의 집기구입비와 소규모 수선에 필요한 경비, 수수료 등) 또는 시설비의 자산취득비(법인/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로 집행해야 하는 내역들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정산 검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생활지원과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생활지원과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6)

【제 목】 행정정보 사전공표 업무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평군 정보공개 조례」
- <표>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정보 사전공표 현황

연번	공표항목	공개시기	최근 공표일	비 고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업체 현황	매년 3월	2014. 10. 15.	
2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매년 1월	2014. 10. 15.	
3	장애인 일자리 현황	매년 1월	2014. 10. 15.	
4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 결과	격년 7월	2014. 10. 15.	
5	공공기관 장애인 전용주차 면수 현황	격년 7월	2014. 10. 15.	
6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현황	매년 1월	2014. 10. 29.	
7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매년 1월	2016. 07. 19.	
8	등록 장애인 수	매년 7월	2016. 07. 20.	
9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수당 지급현황	반기별(1,7월)	2016. 07. 21.	
10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매년 3월	2014. 10. 15.	
11	장애인단체 행사일정	매월 1회	2014. 10. 15.	
12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매년 1월	2016. 07. 19.	
13	발달재활 및 언어치료 기관 현황	매년 1월	2016. 07. 19.	
14	푸드뱅크 현황	매년 1월	2017. 01. 20.	
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안내	매년 1월	2017. 01. 20.	
16	지역사회 복지자원 현황	매년 1월	2017. 04. 13.	
17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	매년 1월	2017. 04. 13.	
18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결과	매년 1월	2017. 04. 13.	
19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매년 12월	2017. 01. 20.	
20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매년 1월	2014. 10. 15.	
21	사회복지법인(시설)후원금 및 사용결과	매년 4월	2017. 04. 17.	
22	사회복지법인(시설)세출, 결산 내역	매년 4월	2017. 04. 17.	
23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매년 1월	2016. 01. 11.	

【지적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중평군 정보공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이에, 생활지원과(구 주민복지실)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업체 현황의 36건의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정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이후에도 각 사업담당자는 공개주기에 따라 공표내용 등을 현행화하여 군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했다.
- 그러나 생활지원과에서는 <표>와 같이 군 홈페이지 내 사전공표 대상정보 23건에 대하여 2014년 내지 2017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공개주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9. 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표대상 항목의 담당부서(담당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현행화 하지 않는 등 사전 정보공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생활지원과

○ 행정상 처분 : 시 정

- 내 용

생활지원과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군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표항목, 공개내용, 담당부서 등을 재정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사전공표 사례를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정보공개 방안을 강구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